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345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3454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소2500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변론 종결 2020. 11. 12.

판결 선고 2020. 12. 17.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소2500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71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2020. 7.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분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6.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단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17785).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462호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123호 사건에서 2017. 8. 24.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2817호로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8,504,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209호)와 상고(대법원 2018다38133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선행 확정판결의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었다.
-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었다.
- (3) 원고는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공제 주장을 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은 이유로 배척되었다.

①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인 D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기재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두 번에 걸쳐 일정 금액씩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위와 같이 분리하여 송금한 것으로 피고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매월 피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의 급여액을 정한 다음 그 금액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률적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6. 11. 피고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1,711,41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불성실하게 입사, 퇴사, 휴직, 퇴사를 반복하여 한번도 1년 이상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실질적으로는 발생한 바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퇴직금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그 재직 중에 매월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선행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중으로 지급받은 돈 7,07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데, 선행 확정판결의 주문을 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8,504,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기판력에 의하여 이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존부'에 관하여 선행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재직 중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원고 주장이 이미 선행 민사소송에서 배척된 점 및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지급물 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20. 6. 11.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1,711,410원을 추심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터이므로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전부 실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 1,711,410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0. 6. 11.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송달일인 2020. 7.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천석

판사박상준

판사차윤제